

의안번호	2211099
의 퇴 인	허성무 의원
회 답 일	2025. 8. 19.
추 계 번호	25A3395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자유무역지역에서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세법」의 적용을 배제하되, 제4장(물품의 반입·반출 및 관리 등) 및 제5장(관세등의 부과 및 감면 등)에서 정한 사항보다 「관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입주기업체에 유리한 경우에는 「관세법」을 적용할 수 있음 * 현행 요건: 물품의 통관에 관하여 「관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 개정안 요건: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사항보다 「관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재량규정
2	안 제11조제6항 신설 (입주계약)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자가 제5항 ¹⁾ 의 기간 내에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25조 제1항·제2항 및 제6항 ²⁾ 에 따라 관리권자*에게 해당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여야 함 * 공장등: 공장, 건축물 또는 그 밖의 시설 * 관리권자: 국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단지 - 국토교통부장관: 공항 및 물류터미널·물류단지 - 해양수산부장관: 항만	의무규정

1) 안 제11조(입주계약) ⑤ 제1항의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은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날 또는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체결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2) 안 제25조(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제한) ① 입주기업체등이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관리권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② 관리권자가 제1항에 따른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등으로 하여금 관리권자가 선정한 다른 입주기업체등이나 제10조에 따른 입주 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권자는 토지 또는 공장등의 양도인에게 실비의 범위에서 양수인의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의 양도가격은 그가 취득한 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공장등의 양도가격은 (...) 감정평가법인등의 시가감정액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단서 생략)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안 제15조제6항제1호 및 제5호 신설(입주계약의 해지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계약이 해지되었거나(제1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후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 후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기 전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제5호)에는 제25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해당 토지 또는 공장등을 관리권자에게 양도하여야 함(단, 제5호의 경우 토지에 한함)	의무규정
		입주기업체등이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후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 후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 토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를 관리권자에게 양도하여야 함(제1항제3호)	의무규정
	안 제25조제1항제3호 및 제2항(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제한)	관리권자가 제1항에 따른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입주기업체등*으로 하여금 관리권자가 선정한 다른 입주기업체등이나 입주 자격이 있는 제3자 에게 이를 양도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권자는 토지 또는 공장등의 양도인에게 실비의 범위에서 양 수인의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 (제2항) * 입주기업체등: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업체	재량규정
3	안 제17조(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 및 예정지역(공항·항만 구역 등 제외)에 있는 국가 소유 토지 또는 공장등을 매각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매각계획을 수립하고, 입주기간 및 수출비중 등을 고려하여 입주기업체등 또는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 매각할 수 있음(제1항) 관리권자는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매각 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 정상적인 지가상승분을 초과하는 지가상승분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토지취득자로부터 이를 기부받을 수 있음(제5항)	재량규정
4	안 제18조(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유무역지역 및 예정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입주 기업체등 또는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음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5	안 제26조의2(이행강제금)	관리권자는 제11조제6항, 제15조제5항·제6항³⁾, 제25조제1항·제2항 또는 제26조제1항 각 호⁴⁾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내 소유한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 또는 양도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일정 기한까지 이행을 명할 수 있고, 그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 또는 양도하여야 할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제1항) 관리권자는 이 법에 따른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할 의무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6	안 제26조의3(과징금)	관리권자는 제11조제6항, 제15조제5항·제6항, 제25조제1항·제2항 또는 제26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 또는 양도한 자에게 해당 토지 또는 공장등의 양도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제1항) 관리권자는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함(제2항)	재량규정

3) 안 제15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⑤ 제1항제2호나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자유무역지역에 소유하는 토지나 공장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입주기업체나 입주 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4) 안 제26조(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등) ① 자유무역지역 안의 토지 또는 공장등을 경매나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취득한 자가 제11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입주기업체나 제10조에 따른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할 것
2. <삭 제>
3. 제1호에 따라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리권자에게 양도할 것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7	안 제44조(자유무역 지역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부과기준)	제29조제5항제1호 ⁵⁾ 에 따라 반출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반출되는 물품 중 원재료로 사용된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함 (제1항) 제29조제5항제1호의 경우 미리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원료인 외국물품에 대한 과세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29조의 ²⁶⁾ 에 따른 사용·소비 신고를 할 때의 그 원료의 성질 및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제2항)	의무규정
8	안 제48조제1호 신설 (부담금의 면제)	입주기업체에 대해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⁷⁾ 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면제	의무규정
9	안 제49조(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활동 지원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입주기업체의 디지털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10	안 제49조의3제2항 신설 (자유무역지역의 친환경·첨단화 지원 등)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은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5)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반출을 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등을 내야 한다.

1.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물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조립·보수 등의 과정을 거친 후 그 물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려는 경우
2. 외국물품등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그대로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려는 경우

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사용·소비 신고 등)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외국물품 중 제29조제4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 또는 소비 전에 세관장에게 사용·소비 신고를 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

7)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正常地價)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4.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 중 이 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1	안 제49조의4 신설 (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무역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 및 교육 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음(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자유무역지역에 있거나 자유무역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12	안 제60조(벌칙)	제11조제6항, 제25조제6항 및 제26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의무규정
13	안 제70조(과태료)	제11조제6항 또는 제25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제2항) 제25조제5항 ⁸⁾ 을 위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료 및 사용료를 받은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제3항) 제25조제4항 ⁹⁾ 에 따른 토지의 양도·임대 또는 사용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제55조의3제1항 ¹⁰⁾ 에 따른 관리권자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2항 ¹¹⁾ 에 따른 관리권자의 지도·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방해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제4항)	의무규정

8) 안 제25조(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제한) ⑤ 입주기업체등이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을 제3항에 따라 입주기업체등이나 제10조에 따른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 임대료 또는 사용료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9) 안 제25조(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제한) ④ 입주기업체등은 제3항에 따라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때에는 사전에 관리권자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계약 상대방의 입주자격에 관하여 관리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0) 안 제55조의3(보고 및 검사 등) ①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 내 토지 또는 공장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입주기업체등에 대하여 (...)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1) 안 제55조의3(보고 및 검사 등) ②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 내 토지 또는 공장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입주기업체등에 대하여 (...)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등 근거 규정
1	안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11조제6항 신설 (임주계약) 안 제15조제6항제1호 및 제5호 신설(임주계약의 해지 등) 안 제25조제1항제3호 및 제2항(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제한)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안 제17조(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안 제18조(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5	안 제26조의2(이행강제금)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6	안 제26조의3(과징금)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7	안 제44조(자유무역 지역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부과기준)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8	안 제48조제1호 신설 (부담금의 면제)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9	안 제49조(임주기업체의 기술개발활동 지원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10	안 제49조의3제2항 신설 (자유무역지역의 친환경· 첨단화 지원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11	안 제49조의4 신설 (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12	안 제60조(벌칙)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13	안 제70조(과태료)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①자유무역지역 내 국유 토지의 민간 매각을 활성화하는 등 각종 제한 및 규제를 완화하고, ②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 기준을 완화하며, ③자유무역지역에 투자하거나 자유무역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해당 구역 내 민간 투자와 신규 기업의 유입을 촉진하려는 취지
- 개정안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증감 요인과 재정지출 증가 요인이 모두 있으며, 이를 조문 및 내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재정지출의 증가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입주기업체등으로부터 이를 양수하거나,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하는 데 따른 지출임
 - 토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자가 이를 처분할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투기적 수요의 방지를 위해 이를 관리권자에게 양도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관리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양수하여야 하므로 국가재정 지출 증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디지털전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자금 조달을 위해 우선적 신용보증을 지원하며, 자유무역지역에 투자하거나 자유무역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 지출 증가
 - 재정수입의 감소는 관세 등의 부과기준 완화에 따른 국세수입 감소와 개발 부담금을 면제하는 데 따른 부담금 수입(국세외수입) 감소,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등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는 데 따른 지방세수입 감소분임
 - 생산된 제품이 아니라 제품에 사용된 외국 원재료의 가격 비율(내·외국 혼용비율 과세) 또는 외국 원료의 성질 및 수량(원료과세)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면 국세수입 감소 가능¹²⁾

12)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관세청은 현행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볼 때 관세 과세 또한 통관의 일부이므로 기업에 유리한 경우 현행법상으로도 「관세법」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임. 이에 따르면 해당 개정 규정은 재정수입 감소를 수반하지 않는 규정이나, ①그동안 자유무역지역 생산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입주기업체에 유리한 내·외국 혼용비율 과세 및 원료과세가 적용되지 않은 점, ②이에 따라 정부가 2025.3.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방안」을 통해 자유무역지역 생산 제품에 대해서도 해당 과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점을 고려하여, 여기에서는 개정 규정과 같이 현행법과 「관세법」 간 적용 관계를

- 입주기업체등이나 제3자가 양도받은 토지 등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면제함에 따라 부담금 수입 감소
-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등에 대하여 조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세수입 감소
- **재정수입의 증가는** 매각수입 및 임대수입, 행정제재 및 벌칙으로 인한 과징금 및 벌금 수입 등임
 - 개정안의 취지에 따라 국유 토지 매각이 증가하거나, 국·공유 토지 및 공장등을 입주기업체뿐만 아니라 입주자격 있는 제3자에게 임대·매각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매각수입·임대수입이 증가
 - 개정안에 따라 신설된 처분·양도 제한 또는 의무 위반 시 이행강제금, 과징금,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국가의 재정수입 증가
 - 그 밖에 관리권자에게 양도하여야 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다른 양수인에게 양도하도록 하는 경우 양수인을 선정하는 등 처리를 위한 비용이 소요되며, 이를 실비 수준에서 양도인에게 징수함에 따라 국가의 재정수입 증가

명확히 하는 경우 재정수입 감소가 수반되는 것(재정수반요인)으로 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자유무역지역에서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물품의 통관에 관하여 이 법보다 「관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입주기업체에 유리한 경우

[표]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및 재정지출 증감 요인

구분	내용
재정지출의 증가	· (제11조제6항) 토지·공장등을 취득한 자로부터 이를 양수 · (제15조제6항제1호)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로부터 토지 및 공장등을 양수 · (제15조제6항제5호·제25조제1항제3호) 사업개시 후 10년 내에 입주계약이 해지되었거나 토지를 처분하려는 자로부터 이를 양수 · (제49조)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디지털전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자금 지원 · (제49조의3)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우선적 신용보증 · (제49조의4제1항·제2항) 자유무역지역 투자 및 이전 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
재정수입의 감소	· (제3조)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입주기업체에 유리한 경우 「관세법」을 적용 · (제3조·제44조)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한 관세등 부과기준 완화 · (제48조제1호) 입주기업체에 대한 개발부담금 면제 · (제49조의4제3항)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재정수입의 증가	· (제17조제1항) 국가 소유 토지·공장등을 임대·매각 · (제17조제5항) 국가 소유 토지 매각 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는 지가상승분 발생 시 토지 취득자로부터 기부금 수납 · (제18조)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공장등을 임대·매각 · (제25조제2항) 토지·공장등의 양도인에게 양수인 선정에 필요한 비용(실비) 징수 · (제26조의2) 토지·공장등의 처분 또는 양도 의무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 (제26조의3) 토지·공장등의 처분 또는 양도 제한 위반 시 과징금 및 가산금 부과·징수 · (제60조) 토지·공장등 양도 제한 위반 시 벌금 부과·징수 · (제70조) 토지·공장등 양도 의무 등 위반 시 과태료 부과·징수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재정지출의 증가분과 재정수입의 감소분을 더하여 총 재정부담액을 산출하고 해당 금액에서 재정수입의 증가분을 차감하여 추계할 수 있으나, 매각 또는 양수 대상이 될 토지 및 공장의 소재지와 면적, 관세 부과 대상 물품의 제조 등에 사용된 외국 원재료의 가격 및 수량과 관세율, 자유무역지역 투자 및 이전 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재정 지원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재정지출의 증가 중 토지 또는 공장등을 관리권자가 양수하는 경우에 대한 지출 증가분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자유무역지역 내 토지나 공장등의 소유자

중 ①토지를 보유한지 10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②정해진 기간 동안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관리권자에게 이를 양도해야 하는 사례를 추정하여야 하는데, 이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와 공장의 위치 및 면적 등을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으므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등을 추계할 수 없음

- 또한, **디지털전환 촉진**을 위한 자금 지원이나 **우선적 신용보증**,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투자 및 이전 보조금**의 경우 구체적인 지원 요건이 하위 법령이나 조례에 위임되어 사업의 지원 기준 및 방식 등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며, 재량지출성 사업의 특성상 해당 규정으로 인한 재원의 추가 투입 여부와 규모 또한 정부의 예산 편성 방향에 따라 상이할 수 있어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참고로, 자유무역지역에 한정되는 지원은 아니나, 각 시·도는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관할구역 내에 본사, 연구소, 공장 등을 신·증설하거나 관할구역 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이미 두고 있음
- 한편, 재정수입의 감소 중 **관세 수입 감소분**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한 외국 원재료의 사용 비율과 가격 및 수량 등을 알아야 하나, 현재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므로 추계에 필요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가정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또한, **개발부담금 감소분**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이미 취득했거나 취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추계기간 동안 부과될 개발부담금 면제 규모를 추정하여야 하는데,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의 가액과 부과기간 동안 해당 토지의 정상지가상승분 등 추계에 필요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가정하기 어려움
 - 참고로, 최근 5년간(2020~2024년) 자유무역지역 내 민간 소유 토지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된 사례*는 인천광역시 1건으로, 산정액은 44억 4,100만원임
 - * 인천광역시 운서동 2835-14 외 115필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공항물류지역), 개발부담금 산정액 4,441백만원(2022.12.19. 부과, 납부의무자 인천국제공항공사)
- 마지막으로, **재정수입의 증가분**을 추계하려면 자유무역지역 내 토지 및 공장 중 개정안에 따라 신규로 매각 또는 임대 대상이 될 재산을 한정할 수 있어야 하나, 현 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으므로 매각가액이나 임대료 등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또한, 안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일부 내용은 토지 및 공장등을 매각·임대할 때 기존에 자유무역지역에서 국유 토지를 임대하여 운영 중인 입주기업체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자를 우대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는데, 이 경우 토지의 매각가액이나 임대료가 일반경쟁에 따라 결정될 시장평가액과 상이할 가능성도 있음
 - * 관리권자가 입주기간 및 수출비중 등을 고려하여 토지나 공장등을 입주기업체등 또는 제3자에게 임대·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
 - ** 관리권자가 토지나 공장등을 임대·매각 시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등으로 임대·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
- 또한, 벌금 및 행정제재의 경우 개정안에 따른 금지 또는 이행 의무를 위반함에 따른 벌금,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의 부과 건수와 금액을 추정 하여야 하나, 건당 부과금액이 양도 대상 재산의 종류와 면적 등에 따라 상이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
 - 과징금의 경우 토지 또는 공장등을 위법하게 양도한 자에게 양도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양도 대상 재산의 종류와 소재지, 면적 등을 가정할 수 없으므로 양도차액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행강제금의 경우 양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양도하여야 할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재산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양도 대상이 될 토지 및 공장등의 종류와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또는 평가액 등을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으므로 재산가액을 추계할 수 없음
- 이에 개정안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내 국유 토지의 민간 매각을 활성화하고,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 기준을 완화하며, 자유무역지역에 투자하거나 자유무역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등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액과 재정수입 증감액을 추계할 수 없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해당
 - 참고로, 자유무역지역 현황과 자유무역지역 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 및 공장등의 현황은 각각 [참고자료 1], [참고자료 2]와 같음
 - * [참고자료 1] 자유무역지역 지정 현황
 - * [참고자료 2] 자유무역지역 내 국·공유재산 현황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김효진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효진	02-6788-4654	hjkim1991@na.go.kr

[참고자료 1] 자유무역지역 지정 현황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민국자유무역지역 홈페이지(<https://www.motie.go.kr/kftz/index.do>)

공항·항만형 자유무역지역 현황(2021년 12월 기준)

구분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포항항	평택·당진항	인천국제공항
지정일	'02.1.1	'02.1.1	'03.1.1	'08.12.8	'09.3.30	'05.4.6(1차) '07.12.31(2차) '20.04.07(3차)
면적(천m2)	12,195	9,047	1,964	925	1,429	3,375
입주업체(개사)	69	55	1	7	16	689
-(외투기업,개사)	(64)	(20)	(-)	(-)	(9)	(36)
입주율(%)	76.8	96.8	100	100	100	99.5
고용인원	2,547	1,238	30	55	884	15,450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 현황(2021년 12월 기준)

구분	마산	군산	대불	동해	울촌	울산	김제
지정일	'70.3(1공구) '72.12(2공구) '02.11(3공구)	'00.10.6	'02.11.21	'05.12.12	'05.12.12	'08.12.8	'09.1.6
면적(천m2)	957	1,256	1,157	248	344	819	991
입주업체(개사)	126	31	33	19	20	39	35
-(외투기업,개사)	(66)	(17)	(17)	(8)	(13)	(8)	(24)
입주율(%)	972	98.5	97.8	92.9	77.2	98.8	61.2
고용인원	5,314	1,935	962	130	297	1,392	513

[참고자료 2] 자유무역지역 내 국·공유재산 현황

자유무역지역 내 국유재산 현황

구분	소재지	취득연도	소유 면적(㎡)
마산자유무역지역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양덕동 975-7, 봉암동 428-10 일원	1977	466,006
		1980	257,874
		1997	72,659
		2004	160,554
		소계	957,093
군산자유무역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오식도동 513 일원	2000	165,215
		2005	211,482
		2007	115,983
		2008	763,196
		소계	1,255,876
대불자유무역지역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611-11 일원	2012	1,156,542
		2013	200
		소계	1,156,742
동해자유무역지역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구호동 247	2010	247,734
울촌자유무역지역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1163-2 일원	2015	343,644
김제자유무역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백산면 부거리 1575 일원	2016	743,805
울산자유무역지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용암리 929, 온산읍 처용리 641 일원	2015	684,943
합계			5,389,837

주: 산단형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현황임

* 국토교통부(공항형): 국유 토지 없음, 해양수산부(항만형): 자료 미제출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지역 내 공유재산 현황

지역	필지	취득연도	소유 면적(㎡)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연수구 송도동, 중구 운북동 소재 1,003필지	1994~2025	11,576,859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처용리, 울주군 청량읍 용암리 소재 81필지	2013	241,833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백산면 부거리 소재 72필지	2016~2023	684,943
전라남도	광양시 도이동 소재 8필지	2009	145,517

주: 부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해당 없음
 자료: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라남도